

하나카드 신용대출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대출의 실행)

-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용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드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간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가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나카드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재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물이행 또는 가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가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 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가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가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결제방법)

-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하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연체잔치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하나카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채권양도)

하나카드는 이 약정사항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2조(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한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款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지정계좌가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하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미집산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제공됩니다.